202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2024년	2025년	비고 (page)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I. 사회복지시설 현황	p.5
②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신설〉	②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u>지역보조기기센터</u> (보건복지부·장애인·이용시설)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통일부·기타·이용시설)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p.10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신설〉	 사회복지시설 인정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상 해당 사업의 근거 규정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정의(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법률이 시설 운영 사업의 근거 규정이 되어야 함 해당 시설이 운영하는 사업이 복지사업의 성격에 부합해야 함 * 단순 기념, 교육, 문화사업 등 취약 계층 보호・지원과 거리가 있는 사업은 배제 필요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 개별 법령상 근거 필요 *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을 부처 지침 등으로 설치할 경우 인정이 어려우며, 사회복지시설 인정시 보조금 지급 등 소관 부처의 예산 확보 계획도 필요 ● 시설 운영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필요 * 기 운영 중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 운영자의 동의 필요 	

2024년	2025년	비고 (page)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p.21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②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판단 기준〉	
① 시설장의 임용절차 및 임용기준 - 임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 결정되는지 여부 등[임용형태의 구분(위탁/채용)]	<u>ㅇ 「근로기준법」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u>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	
② 근로계약서의 근무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근무기간·장소·시간·업무내용을 지정하는 자가 있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③ 시설장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또는 근태 관련 별도 제재 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④ 시설, 비품 소유 주체 및 업무 공백 시 시설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운영비 부담의 주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유무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⑥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 휴가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⑦ 보수와 관련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 포함 여부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8 시설장에 대한 매년 또는 정기적인 업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연봉 협상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9 시설장 업무(시설 규칙 제정, 예산 집행,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지휘권자 및 승인권자 유무	<u>29736 판결 등 참조).</u>	
⑩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자 여부		

2024년	2025년	비고 (page)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p.32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가.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일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특례】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① 공개모집 절차를 2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중 2곳 이상 [*] 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	
*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60세 초과 '대체' 종사자를 특례 채용하는 경우 1회 공모 후 절차에 따라 채용 가능	
- ···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현의하여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p.56
⑥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⑥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신설〉	②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관련 참고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방법 등은 「민법」 및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지침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인/시설/단체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이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및 재산처리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 (02-3476-4000(내선 10번))	
	☞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및 재산처리절차에 필요한 비용(상담·출장비, 인지·송달료, 보수예납금 등)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음	

2024년	2025년	비고 (page)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p.112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보상한도 참고	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보상한도 및 압류 금지 규정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VI. 부록	VI. 부록	p.238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경력〉	
가. 사회복지시설 [*] 에 근무한 경력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 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신설〉	<u> 위 요건 미충족시 80% 인정</u>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또는 위·수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	

2024년	2025년	비고 (page)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p.238
→〈신설〉	→ 사회복지법인의 본사무소, 사무국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법인·시설 회계,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	
	* 위 요건 미충족 인력 80% 인정	
VI.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2.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유사경력)〉 다.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Ⅵ.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2.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유사경력)〉 다.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p.240
두. 〈신설〉 루. 〈신설〉 무. 〈신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② ② ② ③ ② ② ③ ②	p.243